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검 토 보 고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폐지〉
■ 손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449호)

2026. 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III . 검토의견	2
1.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폐지	2
2. 부칙	10
※ 참고자료	1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손솔의원 등 11인
2. 발 의 일 : 2025. 11. 21.
3. 회 부 일 : 2025. 11.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문화의 계승과 농촌지역의 개발 및 축산발전의 촉진이라는 목적 아래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소싸움 경기를 허용하고, 소싸움경기 투표권 발매 및 적중 환급금 지급, 소싸움경기장 설치, 싸움소 등록과 심판 면허, 수익금 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 제정 당시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달리 오늘날의 사회적 가치관 변화와 동물복지 의식이 높아지는 추세에 비추어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데, 현대 사회에서 동물을 단순한 오락의 도구로 이용하는데 대한 국민 일반 정서와의 괴리 문제와 동물에 대한 불필요한 상해와 고통을 유발하는 동물학대 문제가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등을 통해서도 제기된 바 있음.

이에 현행법을 폐지함으로써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동물 오락 행위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법적 근거를 정비하여 사행행위를 금지하고 싸움소 또한 「동물복지법」을 적용받도록 하여 동물 보호와 복지를 한층 강화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폐지

동 법률안은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려는 것임.

폐지법률안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을 폐지한다.

소싸움이란 싸움소 간의 힘겨루기를 말하는 것으로,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소싸움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행적 요소가 있는 소싸움경기를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의 예외로서 허용하되,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충족한 경우에 한해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2002년 제정된 법률임.

동 법률은 4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싸움경기 투표권(우권)의 발매, 소싸움경기장의 설치, 싸움소 및 심판 등 관리, 환급금 지급, 수익금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음.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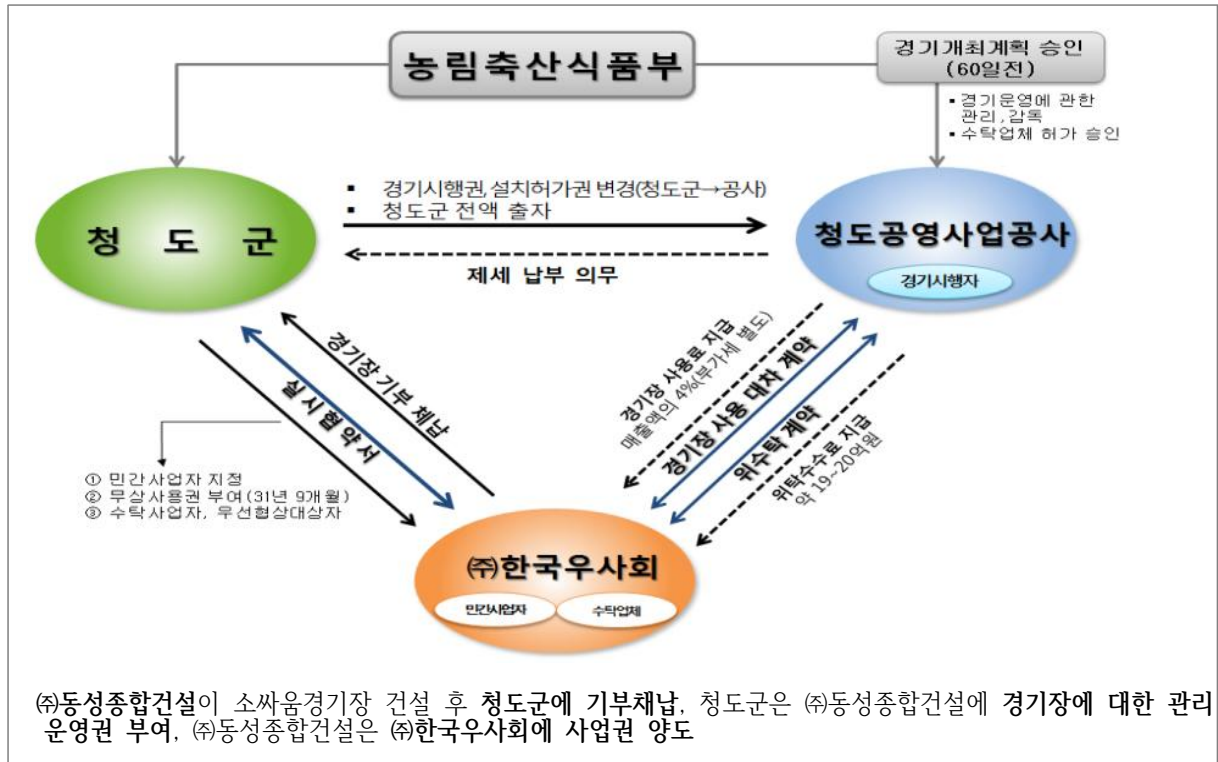
구 분	조제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소싸움경기에 관한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4조(다른법률과의 관계)
제2장 소싸움경기 의 시행 등	제5조(소싸움경기의 시행원칙)
	제6조(소싸움경기의 시행)

구 분	조제목
	제7조(소싸움경기 투표권의 발매)
	제8조(소싸움경기 투표방법)
	제9조(소싸움경기장의 설치)
	제10조(싸움소 및 싸움소 주인의 등록과 심판 및 조교사의 면허 등)
	제11조(환급금)
	제12조(투표의 무효)
	제13조(발매수득금)
	제14조(손실보전준비금)
	제15조(수익금의 사용)
	제16조(소싸움경기 시행의 위탁 등)
	제17조(소싸움경기의 규정)
제3장 보칙	제18조(소싸움경기장의 단속 등)
	제19조(심판·조교사 등의 복지 등)
	제20조(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21조(명령·처분·검사 등)
	제22조(유사행위의 금지)
	제23조(우권의 구매 제한 등)
제4장 벌칙	제24조(벌칙)~제28조(벌칙)
	제29조(벌금의 병과)
	제30조(자격정지의 병과)
	제31조(몰수·추징)
	제32조(과태료)

이에 근거하여 경상북도 청도군에서는 매년 소싸움경기 투표권을 발매하고 소싸움경기 투표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소싸움경기를 개최함.

소싸움경기의 시행주체는 청도군에서 전액출자하여 설립한 지방공사인 ‘청도공영사업공사’로서 경기 시행 업무를 총괄 관리하며, 우권 발매 및 환급금 지급, 경기장 경비, 질서유지 업무 등은 ‘청도공영사업공사’와의 위수탁계약에 따라 민간사업자인 ‘한국우사회’에서 수행하고 있음.

[청도 소싸움경기 추진체계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전통 소싸움경기에 대해서는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항¹⁾ 및 「동물보호법」 제10조제5항제2호

1)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소싸움에 관하여는 「동물보호법」 제10조제2항 및 제97조제2항제1호(「동물보호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만 해당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몸을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동물의 몸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 가.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나.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다. 갈증이나 굶주림의 해소 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없이 동물에게 물이나 음식을 강제로 먹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라. 동물의 사육·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단서²⁾의 규정에 따라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와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가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음.

그러나 소싸움이 반복적 충돌과 훈련 과정에서 싸움소에게 상해와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싸움을 인위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각종 자극행위를 수반하는 등 동물복지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됨.³⁾

이에 동 폐지법률안은 동물권 향상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여 소싸움경기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인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려는 것임.

2025년 7월 동물복지를 침해하는 소싸움의 법적 금지 및 조례 폐지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동물학대, 소싸움 전면 금지 및 관련 조례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이 「국회법」 제123조⁴⁾에 따른 국민동의청원으로서 5만명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고, 2025년 11월 「소싸움경기 전면 금지로 동물권을 존중하기 위한 결의안」이 발의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국회 차원에서 소싸움경기 제도 존치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성은 있다고 보임.

2)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선전하는 행위. 다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은 제외한다.

3) 사단법인 동물해방물결, 이제는 멈춰야 할 소싸움, 청도상설경기와 민속대회를 중심으로, 2025.6.26.

4) 「국회법」 제123조(청원서의 제출) ①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받거나 국회 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지법률안의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찬반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먼저, 개정안에 찬성하는 의견은 법 제정 당시와는 달라진 동물권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 소싸움경기의 폭력성과 사행성 요소, 지방재정의 손실 등을 고려할 때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2025년 소싸움 폐지 여부에 대한 (사)동물해방물결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동물권리와 사회적 인식을 고려해 소싸움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53.4%, 지역 전통과 소싸움의 문화적 가치를 고려해 운영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43.3%로 나타남.

이에 2025년 1월 국가유산청 무형유산위원회는 국가무형문화유산 신규 종목 지정 조사 추진 여부 결정에 있어 소싸움의 민속놀이로서의 가치는 일정 부분 인정되나, 인류 보편적 가치를 고려하여 국가무형문화유산 신규 종목 지정 조사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혀⁵⁾ 소싸움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정책 과정에 반영한 바 있음.

한편, 소싸움 관람이 아동·청소년에게 폭력을 정당화하는 인식 왜곡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과 전통 소싸움경기에 대한 청도군의 보조금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점 등도 지적됨.

5) 2025년 무형유산위원회 전통지식분과 제1차 회의록

참고로, 소싸움경기에서는 2024년 기준 304억원의 매출액이 발생하였으나, 환급금 및 제세금 등을 제외하면 영업이익은 발생하지 않았으며,⁶⁾⁷⁾ 2024년 영업손실액 66억원은 지자체에서 지원하였음.

[최근 3년간 소싸움경기 이용객 및 이익 현황]

(단위: 천명, 억원)

구분	'22	'23	'24
이용자 수	165	296	391
매출액 (A)	296	271	304
매출원가 (B)	276	264	295
판매관리비 (C)	52	65	75
영업이익 (D=A-B-C)	△32	△58	△66
기타손익(E)	45	65	68
세전순이익(D+E)	13	7	2

※주: 매출원가(B) = 환급금 + 제세금 + 수당·상금 등 / 기타손익(E) = 자치단체보조금수익 + 채무면제이익 + 이자수익 등

※자료: 2024년 사행산업 관련 통계(2025.7.)

반면, 폐지법률안에 반대하는 의견은 소싸움은 오랜 농경 생활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민속놀이로 전통문화 유지의 필요성, 싸움소 농가 및 종사자들의 생계, 불법 사행산업 확산 우려 등을 고려할 때 현행법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임.⁸⁾

2002년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논의를 살펴보면, 동 법은 경북 청도군에서 신라시대부터 전승되어 온 소싸움놀이를 1995년 이후 연간 40여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소싸움 축제로 발전 시킴에 따라 이를 전통문화로서 보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의 하나로써 진흥하기 위하여 정부 차원에서 추진된 것으로 파악됨.⁹⁾

6) 다만, 매출원가에는 2024년 기준 국세 10억 7,700만원, 지방세 46억 1,200만원 등 56억 8,900만원의 조세 납부액이 포함됨.

7) 청도공영사업공사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20년 - 112.9%에서 '22년 11.1%로 적자폭이 축소되었으나 이후 하락세를 보이며 '24년 - 22.4%를 기록함(이승태, 지방공기업 재무건전성 분석, 국회 예산정책처 연구용역보고서, 2025.8.)

8) 참고자료: 이해관계자 제출의견

이에 따라 2025년 현재 청도 소싸움경기에는 싸움소 심판(25명), 조교사(21명),¹⁰⁾ 청도공영사업공사 직원(25명) 등이 종사하고 있으며, 25개 시·군에서 60개 싸움소 전업농가를 비롯하여 150개 농가에서 싸움소를 사육하고 있음.

[심판 및 조교사 등록 현황(2025.6.기준)]

구 분	심판						조교사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등록인원	25	-	-	3	5	17	21
출전인원	19	-	-	3	4	12	12

[2025년 지역별 싸움소 및 농가 현황(2025.7. 기준)]

연번	광역시	지역명	싸움소 수	농가 수	전업농가 수
1	경상남도	고성군	2	1	-
2		김해시	63	15	11
3		밀양시	9	2	2
4		사천시	5	2	1
5		산청군	6	3	-
6		영천시	1	1	-
7		의령군	78	15	7
8		진주시	7	5	3
9		창녕군	77	24	10
10		창원시	35	11	7
11		하동군	3	1	-
12		함안군	8	4	4
13		합천군	18	5	1
14	경상북도	고령군	28	7	1
15		김천시	8	1	-
16		성주군	6	1	1
17		청도군	261	33	10

9) 제22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회의록(2002-02-08)

10)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싸움소 및 싸움소 주인의 등록과 심판 및 조교사의 면허 등) ⑥ 조교사 또는 심판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경기 시행자(지방공사 및 지방공단)가 경기 시행자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로부터 조교사 또는 심판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연번	광역시	지역명	싸움소 수	농가 수	전업농가 수
18		청송군	5	1	-
19	대구광역시	달성군	18	7	-
20	대전광역시	대전시	1	1	1
21	울산광역시	울주군	1	1	-
22	전라북도	완주군	6	2	-
23		정읍시	7	1	-
24	충청북도	보은군	32	5	-
25		청주시	1	1	1
합계			686	150	6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또한, 현행 소싸움경기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관리 체계 하에서¹¹⁾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법적 근거 폐지 시 오히려 음성적 도박을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음.

즉, 법률의 전면적 폐지는 문화다양성 저해, 지역경제 및 관련 산업 붕괴, 불법 사행산업 확산 등의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현행법을 유지하되 동물복지 요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 폐지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싸움을 전통문화로서 보존·지원하려는 당초의 입법취지와 동물권에 대한 최근의 인식 변화 및 그 보편성 등을 고려하여, 제도의 단계적 개선

1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행산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것을 말한다.

가. 카지노업 : 「관광진흥법」과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른 카지노업

나. 경마 : 「한국마사회법」의 규정에 따른 경마

다. 경륜·경정 : 「경륜·경정법」의 규정에 따른 경륜과 경정

라. 복권 : 「복권 및 복권기금법」의 규정에 따른 복권

마. 체육진흥투표권 : 「국민체육진흥법」의 규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

바. 소싸움경기: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

등 다양한 정책 대안과 함께 제도의 전면 폐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부칙

법률은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현행법을 폐지함에 따른 경과조치 및 다른 법률의 개정 등을 규정함.

폐지법률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한 소싸움경기의 시행 등과 관련된 처분·절차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 후단을 삭제한다. ②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바목 및 같은 조 제2호바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17조제2항 중 “체육진흥투표권 및 소싸움경기의”를 “체육진흥투표권의”로 한다. ③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10호 사목 중 “승자투표권·소싸움경기투표권”을 “승자투표권”으로 한다. ④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 중 “「경륜·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을 “「경륜·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 중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을 “승자투표권”으로 한다.

폐지법률안

제84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을 “승자투표권”으로 한다.

제119조제12호바목 중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을 “승자투표권”으로 한다.

제156조제8항 중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을 “승자투표권”으로 한다.

⑤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7호를 삭제한다.

소싸움경기와 관련된 종사자, 싸움소 사육 농가, 지방공기업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즉각적인 법률 폐지는 생계 문제, 계약관계 정리 등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률안과 같이 일정한 유예기간을 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음.

경과조치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 소싸움경기의 시행 등과 관련된 처분·절차, 벌칙·과태료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의 공백을 방지하려는 취지이며,

다른 법률의 개정은 소싸움경기가 폐지됨에 따라 법률간 체계정합성을 확보하려는 입법기술적 조치로 타당하다고 보임.

문 의 처

02)6788-5414

- (청도공영사업공사) 급격한 법률 폐지는 전통문화 단절(문화 다양성 보존의 국가적 책무 방기), 지역경제 붕괴*, 관련 산업 붕괴(싸움소 육성 농가, 조교사, 경기장 종사자 실업), 음성적 도박 양산(불법 온라인 도박 성행)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므로, 현행법을 유지하되 동물복지 요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보완 필요

* 소싸움경기장 방문객 소비('24년 1~3분기) : 음식(41.3%), 유통(31.5%), 교통(13.8%)

- (한우협회) 소싸움은 오랜 역사를 지는 민속 문화유산으로, 계승을 통해 문화적 다양성을 지키고 이를 통해 얻는 지역 경제 활성화 고려 필요, 단순히 동물 학대라는 이유로 폐지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이고 동물복지 문제와 사행행위에 대해서는 점진적인 규정 강화와 개선을 통해 보완 필요
- (소힘겨루기협회) 법률 폐지에 반대하며 현행법 유지 틀 안에서 정책적·제도적 개선 필요
 - (문화·역사성) 농촌 공동체 속에서 이어져 온 전통 민속놀이이자 대동문화를 포함하는 전통문화
 - (농촌 경제 및 경제 효과) 농촌경제 및 축산업에 있어서 지역 경제 유발, 고용효과, 관광 상품으로서 가치
 - (동물보호) 문제가 있다면 폐지라는 과도한 조치가 아닌 보완을 통해 개선 필요, 싸움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개선
 - (불법도박) 불법도박 처벌 조항이 있으므로 법적 처리 가능, 단속 강화 필요
 - (해외사례) 일본(국가 지정 중요무형민속문화재로 지정하여 지역별 소싸움 운영), 스위스(알프스 암소싸움을 축제로 활용) 등
- (대구 달성) 소싸움의 국가무형문화유산적 가치 보존 필요, 관광·사육농가 경제에 큰 비중 차지, 동물복지 문제는 관리·감독 강화·상해 방지 규정 강화·수의사 상시 배치·훈련 기준 마련 등으로 해결 필요, 폐지 시 다수의 소가 즉시 도축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 동물복지 차원에서 부정적 결과 초래
- (충북 보은) 법령의 급진적 폐지보다는 제도적으로 동물복지를 실현하는 소싸움경기를 위한 방안을 법제화하여 현시대에 맞는 동물복지를 실현하고, 전통문화의 계승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과 동물복지 실현 사이 비교교량하여 점진적으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법 모색 필요

- **(경북)** 법률 폐지는 전통문화 단절, 지역경제 붕괴, 음성적 도박 양산 등 막대한 사회적 역효과 초래, 현행법을 유지하되 동물복지 요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필요
- **(경북 청도)** 소싸움은 우리 지역의 중요한 전통문화이자 대표상징으로 지역경제에 중요, 구체적 대안없는 폐지 추진시 대규모 실업 발생 및 지역경제 침체 우려, 청도 소싸움 경기사업은 민간자본이 투입된 사업으로 청도 소싸움 경기사업 운영 불가로 협약에 따른 투자비 배상 등 재정 운영에 부정적 영향 및 행정현장의 혼란 발생, 현행 제도 내에서 관리·감독 강화 및 복지 기준 개선 추진이 타당
- **(한우협회 및 소힘겨루기협회 청도지부)** 소싸움은 오랜 세월 농촌 공동체 속에서 이어져 온 지역 고유의 전통문화로 가치 보존 필요, 소싸움은 지역 내 업종(축산농가, 사료·운송·숙박업체·음식점 등)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지역경제 파급효과 상당, 제도개선과 보완에 대한 현실적 논의 필요
- **((주)한국우사회)** 소싸움경기는 비수도권 지역발전의 관광상품으로 축산농가 수입원, 관광객 유입, 고용창출로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 청도소싸움경기사업은 민간자본이 투입된 사업으로 소싸움경기사업 폐지 시 협약(계약)에 따른 민간 사업비 배상 책임 수반
- **(경남 진주)** 전통 소싸움의 문화유산적 가치,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역할, 동물복지에 대한 시대 변화, 법률 및 제도적 보완 등 다양한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 필요
- **(경남 의령)** 소싸움은 매년 지역축제와 연계하여 대회를 개최로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소 힘겨루기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싸움소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 등으로 보완책 마련이 바람직, 의령은 소싸움 경기장을 구축한 상태로, 시설 폐쇄나 타용도 전환 등에 문제 발생
- **(경남 창녕)** 소싸움의 국가무형문화유산적 가치 보존 필요, 관광·사육농가 경제에 큰 비중 차지, 동물복지 문제는 관리·감독 강화·상해 방지 규정 강화·수의사 상시 배치·훈련 기준 마련 등으로 해결 필요, 폐지 시 다수의 소가 즉시 도축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 동물복지 차원에서 부정적 결과 초래, 법률 폐지는 과도한 조치이며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필요한 부분 보완 필요

※자료: 농림축산식품부